



손해보험의 이해 11: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담보

김동겸 선임연구원

■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임.¹⁾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자기신체사고보험·무보험차상해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과 자동차의 사고와 관련하여 제 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

■ 자동차보험상품은 가입대상에 따라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있음.

- 개인용자동차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며, 업무용자동차보험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임.
- 또한, 영업용자동차보험은 사업용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화표시자동차보험의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기관 소유자동차 등을 가입대상으로 함.
- 한편,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운전자 자신이 사상한 경우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보상하며, 운전자가 구속 또는 입원 시 생계비, 벌금 등의 손해를 보상해 줌.

■ 한편,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크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인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과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인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 상법 제726조 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서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대인배상 I 은 자동차 보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 보상²⁾
- 대인배상 II 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 II 는 강제보험인 대인배상 I 과 달리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 성격을 지니며, 대인배상 I 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대물배상은 대인배상 I 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³⁾,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의 손해를 보상
-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⁴⁾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보상을 하며,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

〈표 1〉 자동차사고 유형별 담보종목

사고분류	담보종목	보험의 성격	보험의 목적
인적사고	대인배상 I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재산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신체
	무보험자동차 상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물적사고	대물배상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재산
	자기차량보험	물건보험	피보험자동차

자료: 박상범 · 김용하 · 이희춘(2006), 『손해보험론』.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1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인배상 I 의 피해자 1인당 최대보상한도를 사망과 후유장애의 경우 1억 원으로, 부상의 경우 2천만 원으로 설정함. 한편, 대인배상 I 을 책임보험 또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으로 칭하기도 함.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3항에서 그 금액을 사고 1건당 1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 4) 피보험자동차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함.